

◆ 현 가이드라인은 감염병 발생 동향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.

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(제6판)

2021. 3. 26.



국토교통부

□ 주요 개정사항

현 행	개 정
· 본부 및 건설현장 내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	· 발주자(원도급사)에 <u>전담부서 지정</u> 및 건설현장 내 <u>방역관리자 배치</u>
<신 설>	·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 하도록 <u>작업계획 수립</u>
·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부착	· <u>다국어 포스터를 포함한</u> 홍보물을 현장 내 부착
·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	· 출입 시 건강상태 확인 및 <u>출입자 명단(실제 연락처 포함) 작성</u>
<신 설>	· <u>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</u> <u>코로나19 무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대상임</u> 을 교육
<신 설>	· <u>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은</u> <u>수시 환기</u> 하고, 동시 작업 인원 제한
· 공용시설 중심으로 소독 실시	· <u>접촉이 빈번한 표면은</u> <u>수시로 소독</u> 하고, 공용 시설은 <u>일 1회 이상</u> 소독 실시
· 점심·휴게시간 분산 이용	· 식당·휴게실 <u>동시이용인원 제한</u> , <u>마스크 착용</u> 및 <u>대화 자제</u> 등 안내
<신 설>	· <u>근로자 행동요령 별도 마련</u> (개인위생수칙 준수, 개인용품 소독, 대화 자제, 작업 전 환기 등)
·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 통보	· 확진환자 발생 시 모든 근로자에 통보, <u>발주처·원도급사</u> 및 <u>인근 현장에 전파</u> 하고 <u>국토부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공유</u>

1. 방역관리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

□ 코로나19 현장 방역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

-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확진자 발생 등 상황 대응을 위해 발주자(원도급사)의 전담부서 지정 및 건설현장 내 방역관리자 배치
- 발주자-현장, 현장-유관기관(보건소 등)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·유지하고 의심환자·확진환자 발생 시 즉시 대응
 - 방역관리자 배치 사실을 현장근로자에게 전파하고,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방역관리자에게 알리도록 근로자 교육

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계획 수립

- 작업현장 밀집도를 낮출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활용, 공정 변경, 현장 내 동시 작업자 수를 최소화하도록 작업계획 수립
 - 근로자 간 접촉 차단을 위한 작업동선 분리, 칸막이 설치 등 고려

□ 인력, 자재 등 수급상황 파악 및 대응계획 수립

-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, 자재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, 결근 노동자, 의심환자 발생 동향을 파악하여 유관기관에 전파
- 의심환자·확진환자 발생에 따른 인력 부족을 대비하여 공사 계획, 근로자 관리대책 등 수립

□ 위생물품 구입, 방역·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

-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조치(고용부, 1.31)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, 알콜용 손 소독제, 체온계, 열화상 카메라 등 구입에 안전관리비 활용 가능
- 작업장 방역 및 소독을 위해 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(고용부 고시)」 별표2 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

2.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

① 사업주 행동요령

□ 감염병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, 위생물품 지원

- 현장근로자 대상으로 **코로나19 정보*** 전파 및 **마스크 착용**, **손 씻기**, **기침예절** 등 **감염 예방 행동요령**을 교육하되, **대규모 집합교육** 지양

* (증상) 발열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 미실·소실, 폐렴 등 호흡기감염증
(전파경로)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(기침·재채기) 또는 비말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, 코, 입을 만지는 경우
(잠복기) 1~14일(평균 4~7일)
(치료) 수액보충,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, 백신·치료제는 현재 개발 중

- 일용직·외국인근로자도 교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

- **코로나19 행동수칙** 포스터, **불법체류자 통보제외제도** 등 **다국어** 안내물을 현장사무실, **식당·휴게실** 및 **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**에 부착

*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(www.kcdc.go.kr)에 게시된 다국어 포스터 자료 활용

- **마스크**, **손 소독제** 등 **위생물품**을 **비치***하고, **부족하지 않도록** 준비

* 작업현장 내 주요 장소 및 화장실, 샤워실, 식당, 휴게실 등 공동이용시설

□ 현장 출입 관리

- **근로자·외부 방문객** 출입 시 **마스크 착용 확인**, **체온측정** 및 **호흡기 증상 여부**를 확인하고, **출입자 명단**(실제 연락처 포함) 작성

- 출입구는 최소로 운영하고, 필요 시 건강상태 추가 확인(1일 1회 이상)

⇒ **발열(37.5℃ 이상)이나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)**이 있을 경우 **출근 금지**, **마스크를 착용**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

* 발열,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출근하지 않고, 현장 방역관리자에 알린 뒤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~4일간 경과 관찰

□ 근로자 관리

- ①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, ②해외 방문력이 있거나, ③역학조사 결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2주간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 권고*

* 외출을 자제하고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(1339) 문의

⇒ 출근 금지 대상 근로자에게는 재택근무 권고 또는 휴가를 부여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고,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

- 고용허가제(E-9, H-2)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미감염자임에도 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고용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
- 미입국 근로자는 입국유예 요청이 가능하나, 이미 입국한 경우 사업장 인도 후 상황에 따라 현장출입 관리 조치
-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코로나19 무료검사 및 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 외국인근로자 검사 참여 독려

□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작업 지침 전파

- 작업 중이나 휴식 중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
-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작업장의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고, 창문 개방이 어려울 경우 최소 2시간마다 1회, 10분 이상 환기
- 또한, 밀폐된 공간 및 실내작업장에서도 작업자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고,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

□ 현장 내 소독 및 방역 철저

- 공용 작업도구, 차량 및 건설기계, 난간, 사다리, 손잡이 등 접촉이 빈번한 표면을 수시로 소독(일 2회 이상)
- 식당, 화장실, 샤워실 등 공용시설은 일 1회 이상 소독 실시
- 숙소 제공 시, 건물 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개인 침구·수건류 분리 사용,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숙소 내 모임 금지

- 소독 시 준비 및 주의사항, 대상별 소독방법은 「집단시설·다중이용 시설 소독 안내(질병관리본부 지침)」 참고

□ 단체활동 축소, 근로자 간 접촉 최소화

- 아침조화·집합교육 등 단체활동, 비말이 될 수 있는 구호외치기 등을 지양하고, 소규모 단위로 공지사항 전달 및 안전보건교육 실시
- 화장실·휴게실·식당 등 공용시설의 동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, 식당 내 칸막이 설치, 식사시간 시차이용 및 한방향 식사 조치
 - 식당 내 마스크 착용, 대기줄에서 거리두기, 대화 자제 등 안내
 - 휴식시간 분산을 통해 휴게실 이용 인원 최소화, 휴게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, 취식 금지 등 안내

② 근로자 행동요령

- 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, 가족 중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,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방역관리자에게 알리고 귀가조치
- 올바른 마스크 착용,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씻기, 수시로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
- 안전모·안전화 등 안전장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을 주기적으로 소독
- 작업 중 일상대화는 자제하고, 꼭 필요한 대화 시에도 비말이 튀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
- 휴게실·식당은 개별 이용하고 이용시간을 최소화, 실외흡연실 이용 시에도 거리두기, 대화 자제 및 손소독 등 위생관리 철저
- 밀폐된 공간이나 실내에서 작업 전 10분 이상 환기 실시
- 일과 후 소규모 모임이나 회식 자제

4.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

□ 의심·확진환자 발생 시 신고

- 발열·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보건소,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1339)로 즉시 신고

◆ 확진환자

-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

◆ 의사환자

-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◆ 조사대상 유증상자

-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
- ②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-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

□ 의심환자 격리

- 의심환자 발생 시,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현장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
 -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, 보건소 지시에 따라 수행하고 이송 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
- 의심환자와 접촉한 근로자는 보건당국의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후 대기
-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후에는 알코올, 락스 및 소독제를 이용하여 격리 장소 및 접촉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소를 철저히 소독
-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대상으로 선정된 의심환자 및 접촉자는 유선으로 방역관리자 보고 후 병원 또는 자가 격리 조치

□ 확진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

- 현장 내 확진환자 발생 시 그 사실을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고, 발주처·원도급사 및 인근 현장에 전파
 - 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를 통해 국토부에 확진환자 발생 사실 공유
- 현장출입자 명단 제공 등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, 현장소독 등 사후조치 철저
 - 확진환자에 노출된 장소는 “질병관리본부 감염예방 집단시설·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” 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 실시 후 다음 날까지 사용을 금지*하고, 이후 작업 재개 가능
 - * 소독 당일 바이러스는 사멸하나, 소독제의 위해성을 고려하여 1일간 사용 금지
 - 확진환자 동선과 겹치지 않는 근로자는 보건소와 협의하여 조치
 - * 접촉자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·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될 수 있으며, 확진환자 접촉자는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14일 간 자가격리·능동감시 대상
- 발주처 및 시공사는 현장 소독 등을 위해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, 접촉자 격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사 중지기간 판단
 - 현장 내 소독 및 방역조치가 완료되고 작업인원 또는 대체인원 투입이 가능한 경우 등 공사 재개 조치

□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·계약금액 조정 등

- 확진환자·의심환자 발생 등으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공사 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,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, 계약금액 증액 등 조치
 - * 「신종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」(기재부, '20.2.12)
-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·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,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

□ 민간공사 공기연장,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면제 등

- 현 코로나19 대응상황을 「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*」(이하 표준도급계약서) 제17조에 따른 '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'로 유권해석(국토부, '20.2.28)

*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하여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적인 계약내용과 계약조건

- 건설사업자는 확진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민간 발주자에게 공기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계약기간 연장 등 조치
- 계약금액 조정 시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,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(잔여공사금액이 3% 이상 변동)도 반영
- 연장된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,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기한 연장

□ 확진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휴가·휴업 관리

-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·격리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(보건복지상담센터, 129)되며,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 부여
- 「감염병예방법」에 따라 입원·격리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출근시키지 않은 경우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휴업수당* 지급

* 근로자의 휴가 신청이 없으나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 시, 휴업기간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% 이상(평균임금의 70%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) 수당 지급 필요 (단,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 시 휴업수당 미발생)

□ 예방 단계

구 분	내 용
발주자	-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 등 현장 배포 -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, 비상대응계획 수립 - 근로자 현황 및 자재 수급현황 모니터링 - 위생물품 구입, 방역·소독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 독려 -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- 원도급사·하도급사에 보건교육 시행 지시·확인
원도급사	-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- 현장근로자 출입 시 명부 작성, 건강상태 확인(체온측정 등) -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-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현장 내 주요 장소에 부착 - 소속 및 하도급사 직원에 감염예방 보건교육 실시 - 보건관리자를 통해 근로자 건강상태 수시 확인 - 위생·방역물품 비치(마스크, 손소독제, 열화상 카메라 등) - 식당, 화장실, 휴게실 등 공용장소 중심 소독 실시
현장소장	- 코로나19 대응 정부 가이드라인 등 지침 시행 -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(체온측정 등) - 최근 2주 이내 외국방문 또는 이상징후 근로자에 대한 조치 - 인력, 자재 등 수급상황 수시 모니터링 - 하도급사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교육
하도급사	-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- 현장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작업 시 모니터링 -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특별관리 - 인력소개소 등 인력공급 현황 점검 - 근로자 대상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교육 - 소속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및 착용 확인 - 아침조회 등 단체활동을 지양하고 필요시 소규모로 실시 -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격리공간 확보
근로자	- 현장 출근 시 기침·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협조 -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, 손 소독 등 위생수칙 준수
인력소개소	- 건설현장 인력 모집·제공 시 발열 등 건강상태 확인 - 최근 2주 이내 해외방문 여부 확인

□ 사후조치 단계 (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발생 시)

구 분	내 용
발주자	- 코로나19 대응요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치 - 의심환자 발생 시 보건당국 즉시 신고 - 의심환자·확진환자 발생 시 국토부, 협회 등에 상황 공유 - 현장 내 접촉자, 환자 동선 조사 보고 - 확진환자 발생 시 공사중지,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등 조정 검토
원도급사	-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보건당국 신고 - 의심환자, 확진환자 발생 시 발주자, 협회 등에 상황 공유 - 의심환자 등에 대해 유급휴가 부여 - 현장 전체 방역·소독 등 시행 - 확진환자 발생 시 현장 폐쇄, 공사중지 -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- 접촉자 특별관리
현장소장	-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당국 신고 및 상위기관 보고 -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와 접촉한 근로자 격리조치 및 보고 -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모든 근로자에게 통보 - 보건당국 지시 하 현장소독 - 현장 출입통제
하도급사	-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 등 조치 후 원도급사에 보고 - 의심환자 접촉자는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특별관리 - 확진환자와의 접촉자 파악 및 격리 조치 - 확진환자가 확인된 경우 즉시 현장 내 소속 근로자에게 통보
근로자	- 현장 관리자의 격리조치에 적극 협조 - 현장 외부에서 감염이 의심될 경우, 체온측정 결과 등을 현장에 보고 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 등 조치

[일반국민]

1.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.
2.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.
3. 씻지 않은 손으로 눈·코·입을 만지지 마십시오.
4.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.
5.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.
6.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.

[고위험군] : 임신부, 65세 이상, 만성질환자*

* 당뇨병, 심부전, 만성호흡기 질환(천식, 만성폐쇄성질환), 신부전, 암환자 등

1.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.
2.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
[유증상자] : 발열이나 호흡기증상(기침이나 목아픔 등)이 나타난 사람

1.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.
2.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-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.
3.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(☎1339, ☎지역번호+120),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.
4.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.
5.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.

[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]

1.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.
2. 격리자는 의료인,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.

붙임 3

확진환자 및 접촉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사자

분류	정의	조치사항	접촉자* 관리
확진환자	○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	○ 중증도를 분류하여 입원 치료,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 격리 조치	○ 특별한 증상 없이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해제 * 확진검사를 시행하여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, 자가 격리 및 능동감시는 14일간 지속
의사환자	○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<u>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</u>	○ 고위험군, 중증도 분류에 의해 병원격리 또는 자가 격리 결정(역학조사관) ○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일간 격리 유지	-
조사대상 유증상자	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(홍콩, 마카오 포함) 등 코로나19 지역 전파 국가를 방문한 후 <u>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</u>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, <u>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(기침, 호흡곤란 등)이 나타난 자</u>	○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- (양성) 확진환자로 조치 - (음성) 증상 발현일(또는 입국일)이후부터 14일까지 보건교육 내용 준수 권고	-

* 접촉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를 의미하며, 그 범위는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되나 신고, 접촉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추가 가능